



주요예규

2000년 7월 1일부터  
소규모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 
과세제도가 이렇게 바뀝니다.



글 / 임 현 석 세무사

1. 2000년 7월 1일부터 종전의 간이과세자  
나 과세특례자는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.

- ◆ '99년 연간 매출액이 4,800만원('99년중 신규개업자는 개업일~12.31.의 매출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)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전환되고, 4,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.
- ◆ 다만, 다음 사업자는 '99년 연간 매출액이 4,800만원에 미달하더라도 일반과세자로 적용됩니다.
  - 종전에 과세특례나 간이과세를 포기하여 간이·일반과세자로 적용받고 있는 사업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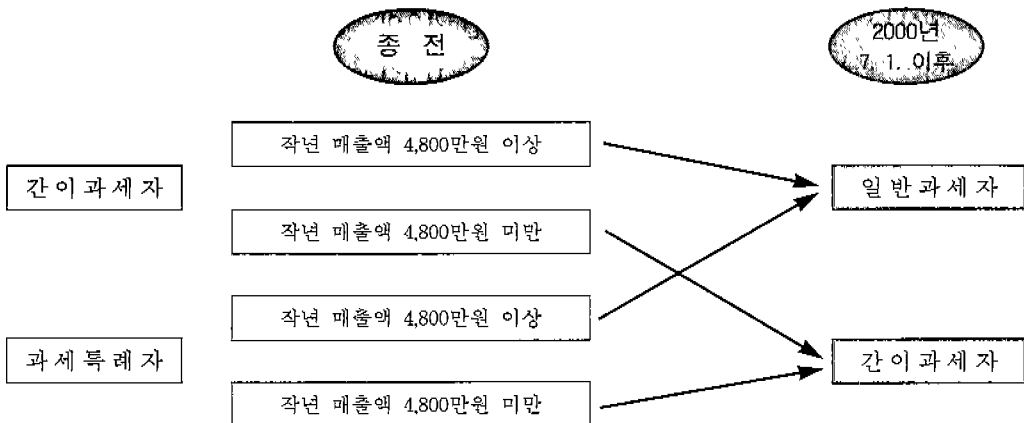


표 1

업종	연도	2000년	2001년	2002년	2003년	2004년 이후
제조업, 소매업, 전기·가스·수도업		2%	2%	2%	2%	2%
건설업, 부동산임대업, 기타서비스업, 농수임어업		2%	2.25%	2.5%	2.75%	3%
음식업, 숙박업, 운수·창고·통신업		2%	2.5%	3%	3.5%	4%

○ 과세특례가 배제되는 업종·지역에 해당되어 간이·일반과세자로 적용받고 있는 사업자

- ◆ 그리고 2000년 1월 1일 이후 신규 개업한 사업자는 2000년 6월 30일 현재 간이과세자인 경우 일반과세자로, 과세특례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.

## 2. 간이과세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과세하게 됩니다.

- ◆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세율(10%)을 곱한 금액으로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.

$$\boxed{\text{납부세액}} = \boxed{\text{매출액}} \times \boxed{\text{업종별 부가가치율 (20\%, 30\%, 40\%)}} \times \boxed{\text{세율 (10\%)}}$$

- ◆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업종별로 20%, 30%, 40%로 정하였으나 이를 3년 6개월에 걸쳐 점진적으로 조정되도록 하여 세부담 증가가 완화되도록 하였습니다.
- 따라서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신제세율(업종별 부가가치율×세율)은 연도별로 다음과 같게 되며, 제도 변경후 첫 과세기간에는 모든 업종의 간이과세자가 현재의 과세특례자와 같이 결과적으로 2%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세부담 증가는 없습니다(표 1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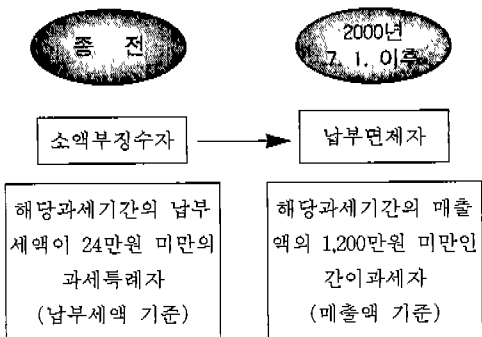
## 3. 과세유형이 변경되더라도 각종 세부담 경감제도를 잘 활용하면 세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.

- ◆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한 세액 공제를 인상 (1% → 2%)
  - 신용카드 매출액이 2%를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공제한도액을 연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, 공제대상자도 모든 개인사업자로 확대하였습니다.
- ◆ 간이과세자가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
  - 간이과세자가 매입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에 대해 사업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(연차별로 적용 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말함)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도록 하여 업종에 따라서는 향후 최대 40%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- ◆ 음식업 간이과세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 신설
  - 음식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음식업에 사용하기 위해 농·축·수·임산물을 구입하면서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영수증을 받는 경우 구입액의 5/105를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

- ◆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업자에 대한 납부세액 경감
  - 2000년 7월 1일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업자로서 작년 연간 매출액이 1억 5천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2000년 2기에는 납부세액의 20%를 경감하고 2001년에는 10%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.
- ◆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업자의 재고품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
  - 2000년 7월 1일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업자는 2000년 1기 매출액(공급대가)의 10% 또는 5%를 재고금액으로 인정받아 동 재고금액에 일정한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2000년 2기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(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)받을 수 있습니다.

매출액의 10%를 재고금액으로 인정하는 업종	제조업, 전기, 가스, 수도사업, 소매업
매출액의 5%를 재고금액으로 인정하는 업종	건설업, 부동산임대업, 기타서비스업, 음식업, 농·수렵·어업, 숙박업, 운수, 창고·통신업

#### 4. 과세기간별로 매출액이 1,2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됩니다.



- ◆ 따라서 종전에 과세기간별로 납부세액이 24만원에 미달하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던 영세한 규모의 사업자는 2000. 7. 1. 부가가치세 과세제도가 변경되더라도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되어 현재와 같이 세무담은 전혀 없게 됩니다.
- ◆ 사업규모가 영세하여 납부면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개업자는 사업자등록을 받드시 하여야 하며, 계속사업자(당해 과세기간 중 신규개업자 포함)는 법정 신고기한(제1기 : 7. 1 ~ 25, 제2기 : 다음해 1. 1 ~ 25)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(연 2회)를 받드시 하여야 합니다.

#### 5. 개인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는 다음 방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·납부합니다.

- ◆ 과세기간(6개월)별로는 사업자가 스스로 신고·납부하고(연 2회 확정신고·납부) 각 과세기간 중간에 1회씩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/2을 고지하면 그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(예정고지·납부).
  - 다만, 예정신고기간 중 신규개업자는 개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하여는 예정신고·납부를 하여야 하며
  -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면제자에 해당되었던 간이과세자는 예정고지·납부가 생략되고 확정신고·납부만 합니다.
- ◆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·납부하기 때문에 확정신고시에는 과세기간 전체(6개월)의 사업실적을 신고하고, 납부할 세액에서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합니다.
- ◆ 그리고 2000. 7. 1 과세유형이 변경되더라도 2000. 7. 1 ~ 25 신고하는 2000. 1기 확정신고는 과세유형 변경전의 사업실적을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전 과세유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.